

서울특별시-경기도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3346
------------	------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국내 정원행사를 주관하는 지자체간 우호 교류정원을 조성하여 성공적인 행사개최와 상생협력 구현
- 나. 이를 통해 전국적인 정원문화를 확산하는 동시에 서울시는 정원문화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26년 정원행사 관련 지자체간 우호 교류정원 1개소씩 조성
- 나. 조성 이후 유지관리 등은 행사주관 지자체에서 시행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26년도 지역교류협력기금(50백만원) 편성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작성자 : 정원도시국 조경과 이영선 (☎2133-2124)

서울시-경기도 우호 교류정원 조성 협약 동의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25.11월에 체결예정인 서울특별시-경기도 업무협약에 따른 정원문화 활성화 공동협력의 일환으로 2026년 양 도시에서 개최되는 정원관련 행사장 내 상호 우호교류 정원 조성을 위한 재정 수반 요인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6년, 1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지출	○ 서울정원 조성	50,000	-	-	-	-	50,000
	소계(a)	50,000	-	-	-	-	50,0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50,000	-	-	-	-	50,000

※ 경기도에서 서울숲에 경기도정원 조성 예정(50백만원)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국비		-	-	-	-	-	-
시비	지방세수입	50,000	-	-	-	-	5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등	-	-	-	-	-	-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50,000	-	-	-	-	50,000

5. 덧붙이는 의견

- 본 비용추계는 서울시 조경분야 사업대상지 조사지침 등을 적용하여 작성함
- 추후 사업추진 시 계획안에 따라 상세내역은 조정될 수 있음

6. 작성자

- 담당과장 : 조경과장 온수진(☎2133-2101)
- 담당팀장 : 서울정원팀장 한봉기(☎2133-2108)
- 담 당 자 : 이영선(☎2133-2124)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 분	산출식	금액(원)	비고
합계		50,000,000	
정원 조성	50,000,000원 × 1식	50,000,000	
식재기반조성	30,000원 × 200㎡	6,000,000	
아교목	250,000원 × 10주	2,500,000	
관목	7,000원 × 1,000주	7,000,000	
초화	7,000원 × 3,000본	21,000,000	
경계석	50,000원 × 40m	2,000,000	
의자	500,000원 × 5개	2,500,000	
포장	68,000원 × 20㎡	1,360,000	
테크	250,000원 × 10㎡	2,500,000	
정원안내판	2,500,000원 × 1개	2,500,000	
수목표찰	10,000원 × 15개	150,000	
기타	2,490,000원 × 1식	2,490,000	수목이식,철거,가림막웁스 등

서울특별시-경기도

“우호 교류정원 조성” 협약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이하 “양 도시”라 한다)는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한 양 도시간 우호 교류정원 조성에 대해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6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2026경기도정원박람회’ 행사장 내 교류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사항) 양 도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력한다.

1. 양 도시는 각 도시 내에 상대 도시 교류정원 부지를 제공한다.
2. 경기도의 서울정원 조성을 위해 설계 및 시공은 서울특별시가, 이후 운영 및 관리는 경기도가 담당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기정원 조성을 위해 설계 및 시공은 경기도가, 이후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가 담당한다.

제3조(협약서의 변경) 양 도시는 별도 합의에 따라 이 협약서의 일부 내용을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효력)

- ① 이 협약은 시 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즉시 발생하고, 일방이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 ② 일방이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양도시가 협의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양 도시는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협약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제6조(기타사항)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협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기관 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이 협약이 체결되었음에 증명하고, 이 협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 당사자는 협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 한다.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시장 오 세 훈

경기도지사 김 동 연

경기도-서울특별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협약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이하 “양 도시”라 한다)는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한 양 도시간 우호 교류정원 조성에 대해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6 경기도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와 ‘2026서울국제정원박람회’ 행사장 내 교류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사항) 양 도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력한다.

1. 양 도시는 각 도시 내에 상대 도시 교류정원 부지를 제공한다.
2. 서울특별시의 진주정원 조성을 위해 설계 및 시공은 경기도가, 이후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가 담당한다.
3. 경기도의 서울정원 조성을 위해 설계 및 시공은 서울특별시가, 이후 운영 및 관리는 경기도가 담당한다.

제3조(협약서의 변경) 양 도시는 별도 합의에 따라 이 협약서의 일부 내용을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효력)

- ① 이 협약은 시 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즉시 발생하고, 일방이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 ② 일방이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양도시가 협의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 ① 양 도시는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협약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전항의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제6조(기타사항)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협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기관 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이 협약이 체결되었음에 증명하고, 이 협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 당사자는 협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 한다.

2026년 월 일



경기도지사 김 동 연

서울특별시시장 오 세 훈